



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(주) 위법 계약해지 요구서

[첨부 4]

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(주) 귀중

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① 적합성 원칙, ② 적정성 원칙(주택담보대출, 증권·지적재산권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만 해당), ③ 설명 의무,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,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)

차량번호	
고객명	
생년월일	
주소	
연락처	
대상 금융상품	
위법 사실의 내용 (중복 체크 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7 조 제 3 항에 위반한 사실 : 적합성 원칙
	<input type="checkbox"/>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8 조 제 2 항에 위반한 사실 : 적정성 원칙
	<input type="checkbox"/>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9 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위반한 사실 : 설명의무
	<input type="checkbox"/>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0 조 제 1 항에 위반한 사실 : 불공정영업행위
	<input type="checkbox"/>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1 조에 위반한 사실 : 부당권유행위
구체적 위반사실 기재	(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첨부 필요)
신청일	
처리 기간	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

년 월 일 성명(계약자) (인/서명)

※ 계약해지 불가 사유

- ①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
- ②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
- ③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
- ④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행위에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이 있음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,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.

다만, 10 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구분에 따름

1.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여부를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: 해당사유 해소 후 지체없이 알릴 것
2.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여부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: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